

2018학년도 제4차
<제337차 이사회 회의록>

2018. 12. 20.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8학년도 제4차

〈제337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2 인	2 인
재적임원	12 인	2 인
참석임원	12 인	2 인

1. 일 시 : 2018. 12. 20(목) 07:30 ~ 10:00 (회의소집 통보일 : 2018년 12월 12일)

2. 장 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카멜리아룸(2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김성진, 윤성복, 문길주, 신희택, 김 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 홍, 박형주, 김선용 (12인)
- 감사 : 문휘창, 배홍기 (2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료원장 유희석,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교무처장 장우진, 기획처장 최정주 (4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신창규(2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두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형주 총장이 아주대학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상일

이사

이영현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37차 이사회 심의안건은 학법대우 제18-287호(2018.12.12)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본관) 증축 승인(안), 의안 제2호 2019학년도 1학기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심의(안), 의안 제3호 아주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 의안 제4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의안 제5호 수익용 기본재산(부산 온천동 상가·군산빌딩) 매각 승인(안), 의안 제6호 아주자동차대학 교지 토지교환 승인(안)의 6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8. 심의내용

제 1 호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본관) 증축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본관) 증축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 증축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의료법 준수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병상간격 조정,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서비스 유지 필요, 노후화된 본관 5층의 중환자실 이전, 암환자 항암치료의 편리성 증대를 위한 항암 낮병동 신설,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 병동 추가운영과 향후 경쟁자 진입에 대비한 필수 진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병원동 증축을 계획하였습니다. 규모는 병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에 걸쳐 병원 북측의 1,306평, 남측의 550.3평과 본관동 E/V 설치 및 응급실 대기공간 조성 면적을 포함하여 총 1,961.3평이 되겠습니다. 병상 44개와 수술실 4실 등의 진료 인프라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건축비, 장비비 및 인프라 보완 설비 등을 포함하여 총 50,850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19.5월 착공하여 2020.6월에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2017학년도에 유보자금 100억원을 확보하였고 2019학년도까지 총 3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오픈하는 2020학년도에는 리스차입 등으로 나머지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현 병상당 필요인력 수준을 감안했을 때 교원 17명을 포함 총 165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증별 도면 등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성 : 병원 경쟁력은 규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1개의 병상이라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성 진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영국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본관) 증축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2 호 2019학년도 1학기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심의(안)

이 사 장 : 2019학년도 1학기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심의(안) 발의.

이사(총장) 박형주 : 본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대상자는 정년트랙 4명과 비정년트랙 4명이 되겠으며, 중도 임용포기를 한 융합시스템공학과 조민수 후보자는 이번 임용 제청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임교원 신규임용 대상자 연구실적 분석 자료를 별지로 배포해 드렸는데, 세계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임용후보자가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앞으로는 신입교원 채용 시 심사위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자료를 배포하여 연구실적의 질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료원 전임교원 신규임용 대상자는 정년트랙 조교수 19명 및 부교수 1명으로서 총 20명에 대해 임용 제청드립니다. 본교 재임용 대상자는 심사 미신청자 1명을 제외한 정년트랙 5명, 비정년트랙 21명으로서 총 26명이며, 의료원은 조교수 12명, 부교수 3명인 총 15명입니다. 임용 대상자들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임용 심사는 이사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사회 당일 임용후보자에 대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시간과 정보가 부족해 보입니다. 의료원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후보자로 선발했을 테지만, 인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의료원 교원 신규·재임용에 대한 심사는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료원장 유 희 석 : 재임용 심사는 법적으로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교원 신규임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하고 내년 1월 말 이사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 김 성 : 이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신 상 협 :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나머지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성 진 :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노석

이사

박형주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그러면 2019학년도 1학기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심의(안)을 심의한 결과, 의료원 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보류하고 나머지는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교원 임용 심의 내용

가. 신규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 교	건축학과	최병주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물리학과	이재웅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불어불문학과	오윤미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행정학과	윤창근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전자공학과	이종욱	(산학협력중점) 부교수	2019.3.1.~ 2021.2.28.(2년)
	글로벌경영학과	박철형	(교육중점) 조교수	2019.3.1.~ 2021.2.28.(2년)
	불어불문학과	REMI MALEN FANT	(교육중점) 조교수	2019.3.1.~ 2021.2.28.(2년)
	교육대학원	곽승주	(교육중점) 조교수	2019.3.1.~ 2021.2.28.(2년)

- 이상 본교 8명 -

나. 재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 교	기계공학과	최영만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기계공학과	강대식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전자공학과	홍송남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약학과	진효연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에너지시스템학과	정재성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기계공학과	윤백	(산학협력중점) 부교수	2019.3.1.~ 2022.2.28.(3년)
	전자공학과	Ran Rong	(교육중점) 조교수	2019.3.1.~ 2022.2.28.(3년)
	소프트웨어학과	정크리스틴 (Kristin)	(교육중점) 조교수	2019.3.1.~ 2022.2.28.(3년)
	경영학과	Felver Troy Benjamin	(교육중점) 조교수	2019.3.1.~ 2022.2.28.(3년)
	경영학과	Cui Jinhua (최금화)	(연구중점) 조교수	2019.3.1.~ 2022.2.28.(3년)
	영어영문학과	Donald Hearn	(교육중점) 조교수	2019.3.1.~ 2022.2.28.(3년)
	영어영문학과	Brad Crawford	(교육중점) 조교수	2019.3.1.~ 2022.2.28.(3년)
	영어영문학과	Katie Mae Klemsen	(교육중점) 조교수	2019.3.1.~ 2022.2.28.(3년)
	다산학부대학	이병훈	(교육중점) 부교수	2019.3.1.~ 2022.2.28.(3년)

< 간서명란 >

이사장

추노석

이사

박정우

이사

이영현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 교	다산학부대학	김진희	(교육중점) 조교수	2019.3.1.~ 2022.2.28.(3년)
	다산학부대학	Scott Scattergood	(교육중점) 조교수	2019.3.1.~ 2022.2.28.(3년)
	다산학부대학	Nicholas McGhie	(교육중점) 조교수	2019.3.1.~ 2022.2.28.(3년)
	다산학부대학	Kevin Hawthorne	(교육중점) 조교수	2019.3.1.~ 2022.2.28.(3년)
	다산학부대학	Joseph Ball	(교육중점) 조교수	2019.3.1.~ 2022.2.28.(3년)
	다산학부대학	Joshua Houser	(교육중점) 조교수	2019.3.1.~ 2022.2.28.(3년)
	다산학부대학	Vincent Gilhooley	(교육중점) 조교수	2019.3.1.~ 2022.2.28.(3년)
	다산학부대학	신종호	(산학협력중점) 조교수	2019.3.1.~ 2022.2.28.(3년)
	에너지시스템학과	안광준	(연구중점) 부교수	2019.3.1.~ 2022.2.28.(3년)
	교육대학원	전유영	(교육중점) 조교수	2019.3.1.~ 2022.2.28.(3년)
	공공정책대학원	윤영식	(산학협력중점) 부교수	2019.3.1.~ 2022.2.28.(3년)
	산학협력창업교육원	이성엽	(산학협력중점) 부교수	2019.3.1.~ 2022.2.28.(3년)
의 료 원	약리학교실	양시영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병리학교실	고영화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의료정보학과	윤덕용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뇌과학과	장재락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소화기내과학교실	김순선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신경과학교실	윤정환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외과학교실	이수형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산부인과학교실	공태욱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비뇨의학교실	추설호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마취통증의학교실	김지은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유전체불안정성제어연구센터	모정순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유전체불안정성제어연구센터	이영수	조교수	2019.3.1.~ 2023.2.28.(4년)
	병리학교실	임현이	부교수	2019.3.1.~ 2025.2.28.(6년)
	소화기내과학교실	신성재	부교수	2019.3.1.~ 2025.2.28.(6년)
	미생물학교실	최용준	부교수	2019.3.1.~ 2025.2.28.(6년)

- 이상 본교 26명 / 의료원 15명 -

제 3 호 아주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최정주 : 아주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이 제정되면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규정 단계에서 정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백영주

이사

이영현

하고자 합니다. 보수규정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에서 비정년트랙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 제수당 중 가족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 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박 상 일 : 가족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는데, 가족 인원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던 금액을 반영하여 기본급을 조정하셨나요?

기획처장 최정주 : 가족 인원수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산정하여 기본급에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노사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 사 박 상 일 :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윤 성 복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보수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55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대우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과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u>정년트랙 전임교원</u> (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55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대우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과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u>전임교원</u> (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직원보수) 직원의 보수는 별표1 직원호봉표(이하 “별표1”이라 한다)상의 금액과 <u>별표2 제수당지급기준표</u> (이하 “별표2”라 한다)상의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매회계년도별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제5조(직원보수) 직원의 보수는 별표1 직원호봉표(이하 “별표1”이라 한다)상의 금액과 <u>별표2 제수당지급기준표</u> (이하 “별표2”라 한다)상의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매회계년도별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제9조(제수당의 종류) ① 교원의 제수당은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유류비, 자녀학비보조	제9조(제수당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정주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수당, 급량비, 학생지도비로 구분한다.</p> <p>② 직원의 제수당은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급량비, 유류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비, 육아휴직수당, 연차수당으로 구분한다.</p>	<p>② 직원의 제수당은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삭제>, 급량비, 유류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비, 육아휴직수당, 연차수당으로 구분한다.</p>
<p>제14조(가족수당) ① 직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p> <p>②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우자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불구폐질자. 3.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불구폐질자. 4.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단, 휴학 기간 중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불구폐질자 6. 부모가 사망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 이상 형제자매 중 불구폐질자 <p>③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가족이 타 직장에서 이중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④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되, 당해 회계연도 이외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p> <p>⑤ 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p>	<p>제14조(가족수당) <삭제></p>
<p>제17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교원과 직원(외국의</p>	<p>제17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교원과 직원(외국의</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영국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국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이 국내 <u>중고등학교</u>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가 있는 경우 3월, 6월, 9월, 12월에 별표2에서 정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p> <p>② 자녀가 외국의 <u>중고등학교</u>, 외국인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국내 <u>국공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u> 학비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단, 당해 회계연도 이외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p> <p>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 2. 자녀가 재학 중 퇴학, 휴학 등 신분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p>국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이 국내 <u>고등학교</u>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가 있는 경우 3월, 6월, 9월, 12월에 별표2에서 정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p> <p>② 자녀가 외국의 <u>고등학교</u>, 외국인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국내 <u>국공립고등학교</u> 학비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단, 당해 회계연도 이외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4(학생지도비) <u>교원에게</u>는 학생지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학생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연구년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18조의4(학생지도비) <u>정년트랙 전임교원에 한하여</u> 학생지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학생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연구년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19조(기타사항) ① 교원과 직원이 학교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원은 총장이 따로 정하고,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p> <p>② 강의료, 교재개발, 연구비, 심사비, 자문비, 학생활동지도비, 논문심사및지도비 등 연봉외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u>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외국인교원</u>, 특별임용교원, 조교, 계약직(임시직, 연구원 등)의 보수는 매 회계연도별로 총장이 따로 정하며, 복무요건에 따라 급량비와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9조(기타사항)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 특별임용교원, 조교, 계약직(임시직, 연구원 등)의 보수는 매 회계연도별로 총장이 따로 정하며, 복무요건에 따라 급량비와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5조, 제9조, 제14조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영호

이사

이영현

제 4 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발의.

이 사 장 : 다음으로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입니다. 나누어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 보직 중 2018.12.19자로 보직사임서를 제출한 오영태 산학부총장과 임재익 총무처장의 후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총장의 제청을 받아 산학부총장에 전자공학과 오성근 교수, 총무처장에 건축학과 권순정 교수를 임명하고자 동의 요청드립니다. 임명 제청된 보직 교원의 자세한 이력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최 홍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임명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 내용

보 직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임명요청일자	비 고
산학부총장	전자공학과	교 수	오 성 근	2018.12.21	신임
총무처장	건축학과	교 수	권 순 정	2018.12.21	신임

제 5 호 수익용 기본재산(부산 온천동 상가·군산빌딩) 매각 승인(안)

이 사 장 : 수익용 기본재산(부산 온천동 상가·군산빌딩) 매각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먼저, 부산 온천동상가 매각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동 일대에 4,9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내년부터 입주가 진행되면서 온천동상가 부지에 대한 매각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허가 유효기간인 1년 이내에 매각 가격이 좋을 경우 매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매각시 수익성을 검토한 결과 처분시 금리가 임대수익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매각을 시행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정기에금으로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박 영 석

이사

이 영 현

군산빌딩의 경우, 군산 현대중공업,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경기악화로 주변 공실 및 건물매각 건수가 증가하여 본 건물의 임차인 퇴거 및 장기공실이 우려됩니다. 이에 해당건물의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처분을 통해서 예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안정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익성 검토 결과도 매각시 수익이 다소 유리한 상황으로, 추후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처분할 예정이며, 처분금은 수익용 기본재산 정기에금으로 대체 취득할 예정입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 길 주 :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수익용 기본재산(부산 온천동 상가·군산빌딩) 매각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매각 승인 내용

가. 매각처분 대상 부동산 현황

1) 부산 온천동 상가

소재지	지번	구분	전체면적	장 부 가	비 고
부산 동래구 온천동	1250-1,2,3,25	토지	3,003.1㎡ (908평)	1,773,565,797원	탁상감정가 175억원
		건물	1,138.72㎡ (344평)	16,052,972원	
		계		1,789,618,769원	

2) 군산빌딩

소재지	지번	구분	전체면적	장 부 가	비 고
전북 군산시 중앙로 3가	54-3	토지	1,987.0㎡ (601평)	1,166,779,530원	탁상감정가 25억원
		건물	1,556.68㎡ (471평)	455,968,999원	
		계		1,622,748,529원	

나. 처분에정금액 : 추후 시행예정 감정평가금액 이상

다. 처분금의 용도 : 수익용기본재산(정기에금) 대체 취득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석

이사

박정규

이사

이영현

제 6 호 아주자동차대학 교지 토지교환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교지 토지교환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나누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아주자동차대학 교지 내에 대우건설의 소유지가 일부 존재하고 있어 이를 우리 법인 소유의 교지와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우학원과 대우건설이 각각 선임한 공인감정기관이 감정평가를 시행하였고 평균액을 기준으로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법인 교환대상 토지가 약 3억 원의 가치가 더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기로 하였습니다. 보상 받는 토지의 위치 등은 협의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이사장님께 위임하여 주시면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자 합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 상 일 :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 교지 토지교환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교환대상 토지

구분	필지	¹⁾ 면적	비고
대우건설	8필지 (관산리 1-3 외)	2,830평 (9,355㎡)	1-3, 1-4, 2-1, 2-3, 42-1, 305-2, 305-3, 306-1
대우학원	2필지(관산리 산7-39 외)	4,390평 (14,152㎡)	산7-39(필지분할), 307-3

주. ¹⁾면적은 보령시에서 구획한 토지이용계획도(안)의 분할면적 기준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37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와 이영현 이사, 박형주 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박형주를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형주

이사

이영현

10. 폐회선언

이 사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전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37차 이사회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18 년 12 월 20 일

이사장	추 호 석	추 호 석
이 사	김 성 진	김 성 진
이 사	윤 성 복	윤 성 복
이 사	문 길 주	문 길 주
이 사	신 희 택	신 희 택
이 사	김 성	김 성
이 사	박 상 일	박 상 일
이 사	신 상 협	신 상 협
이 사	이 영 현	이 영 현
이 사	최 홍	최 홍
이 사	박 형 주	박 형 주
이 사	김 선 용	김 선 용
감 사	문 휘 창	문 휘 창
감 사	배 홍 기	배 홍 기